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재판공개원칙》과 그 기만성

신 광 일

재판의 공개는 세계 각국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재판과 관련한 법들에 규정 하고있는 원칙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자유>요, <인권>이요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하여 떠들어대지 만 그것은 하나의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김일성전집》 제89권 233폐지)

자본주의나라들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법들에 규정되여있는《재판공개원칙》은 재판의 계급적본질을 은폐하고 재판에 《민주주의》와 《공정성》의 외피를 씌워보려는 기만적인 원칙이다.

부르죠아지들은 특히 자본주의형사재판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판공개원 칙》을 내세우고 그것을 통하여 저들의 재판이 《민주주의》와 《객관성》, 《공정성》이 보장된 재판이라도 되는듯이 광범한 대중을 기만하고있다.

부르죠아지들이 아무리 자본주의형사재판에 《민주주의》와 《객관성》,《공정성》의 외피를 씌워도 그것은 극소수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재판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다.

부르죠아지들이 내세우고있는 《재판공개원칙》은 재판을 일반군중의 참가밑에 진행한다는것이다. 즉 재판소가 재판심리를 진행할 때 소송관계자외에 일반군중이 방청으로 참가하여 재판심리의 전과정을 직접 보고 재판의 《불공평》과 《판사의 전횡》을 감독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사회적제약을 실현하고 그로 하여 사법의 부패를 방지한다는것이다.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재판공개원칙》은 유럽에서 부르죠아혁명시기에 신흥부르죠아지들이 재판심리에 방청을 일체 참가시키지 않고 심리를 비밀리에 진행하던 봉건국가의형사재판을 반대하여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명목아래 들고나왔으며 그후 세계각국에 이 원칙이 류포되였다.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재판공개원칙》은 재판소가 진행하는 재판심리의 모든 절차를 대중의 감시밑에 둠으로써 판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일반대중의 준법의식을 높이는것 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이것은 신흥부르죠아지들이 봉건국가의 법적통제에서 벗어나 국가정권을 장악하던 시기에 그들의 요구와 리익을 대변하여나온 《원칙》이다.

부르죠아지들은 봉건규문소송에서는 심리를 비밀리에 진행하기때문에 일반대중이 재판관이 법정에서 온갖 전횡을 다 부려도 그에 대한 관찰을 할수 없어 판결이 잘못 내려져도 아무러한 항변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개하면 재판소의 재판심리활동을 군중의 감시밑에 두고 재판의 《민주주의》와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게 되므로 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군중이 믿게 된다고 하였다.

부르죠아지들은 방청으로 참가한 군중이 재판심리의 전과정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판사가 재판심리를 《공정》하게 하지 못하거나 또는 판결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그것을 여론의 힘으로 바로잡을수 있게 하므로 《재판공개원칙》을 재판심리에 적용하면 재판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심리와 판결을 내리는데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수 있다고 떠벌이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재판소는 다른 국가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부르죠아국가정책의 집 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이다.

재판은 지배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출현하였으며 현대에 이르는 전기간 지배계급의 정책실현에 복무하여왔다.

재판은 지배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자에게 형벌을 적용하여 사회제도와 지배계급의 리익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그 어느 사회에서나 재판은 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진행되었고 또 지배계급의 통제밑에서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죠아지들은 재판심리의 《공개》와 같은 기만적인 원칙을 내놓고 재판의 이러한 계급적본질을 가리워보려고 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법적규제를 요약해보면 자본주의제도와 저들의 리익이 침해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은 공개하며 당국의 죄상이 조금이라도 드러 날수 있는 경우 각종 구실을 붙여 심리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판결도 비밀리에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아무리 재판을 공개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자본주의제도를 유지하고 사회의 특권층인 극소수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데로 지향되는 재판의 《공개》이다.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재판공개원칙》은 광범한 근로대중을 기만하여 그들이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것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다.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재판공개원칙》의 기만성은 첫째로, 공개하는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는데서 표현된다.

부르죠아지들이 형사재판을 통하여 노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에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람들을 공포속에 몰아넣자는데 있다. 이로부터 부르죠아지들은 재판심리를 공개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들의 투쟁을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징벌하는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불복과 반항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가를 알게 하여 자본주의법률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주고있다.

국가와 사회의 모든 권력이 극소수 착취계급에게 있고 근로대중에게 무권리와 순종 만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제도에서 재판의 공개는 재판심리와 판결에 대한 군중적통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군중에게 위협을 가하여 그들이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거나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리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그러면서도 부르죠아지들은 공민의 법의식을 높이는것은 국가의 기본요구로서 재판심리에 군중이 참가하여 법을 위반하면 형벌이 가해진다는것을 보여주는 과정을 통하여 근로대중의 《법률관념》, 《준법의식》을 높여줌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는데 유리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범죄의 발생을 줄이는것과 함께 범죄를 예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이 정치적으로 점차 각성되여 단결의 힘으로 통치배들의 반동적시책에 압력을 가하는 힘이 커지게 되자 재판공개도 점차 근로대중을 위압하는 수 단으로서의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였다. 그리고 《재판공개》는 인민대중앞에 부르죠아통치배들의 반동적인 통치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반동적죄행을 폭로하는 과정으로, 반동통치배들에 대한 인민대중의 분격을 더욱 돋구어놓는 결과를 가 져오게 되였다.

이로부터 부르죠아지들은 재판심리를 통하여 저들의 반인민적죄행이 폭로될수 있는 사건들은 공개하지 않고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형사재판을 공개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철두철미 광 범한 근로대중에게 자본주의법에 복종하지 않고 범죄를 범하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공포 를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재판공개원칙》의 기만성은 둘째로, 여러가지 제한조건을 내결 고 재판심리에 방청군중의 참가를 극히 제한하고있다는데서 표현된다.

부르죠아지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부문법들에 재판의 공개를 형사재판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규정해놓고있지만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내걸고 방청군중이 재판심리에 참가하는것을 제한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공개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해당 사건의 취급처리에 리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참가하여 재판심리의 전과정과 판결의 선고를 직접 관찰할수 있게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의 헌법과 부문법들의 《재판공개원칙》과 관련한 규정들에는 재판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이 참가할수 있다고 법조문상 규정해놓고있지만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내걸고 방청군중의 참가를 극히 제한하고있다.

우선 법정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판사의 권한으로 방청군중의 참가를 제한 하고있다.

재판을 공개하자면 재판소가 진행하는 재판심리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리해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다 법정심리에 참가하여 심리전과정을 직접 관찰할수 있게 하 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재판소조직법 등의 법들에 법정의 크기에 따라 방청군중의 참가자수를 제한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특정한 사람들의 참가를 제한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의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내걸고있는것은 지배계급, 착취계급에 속하는자가 범죄를 감행한 경우 재판심리를 공개하면 저들의 반인민적인 범죄행위들이 폭로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일반대중이 재판심리에 방청으로 참가하는것을 제한하거나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여 그들의 리익을 보호해주자는데 진의도가 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도 무자비하게 해치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에는 각종 테로단체들의 테로행위와 개인복수 그리고 변태적인 취미를 가진자들의 행위로 하여 역전, 학교와 뻐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폭탄 과 총탄에 의한 테로공격사건이 그칠새 없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상해 를 입고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공개법정에서 판사, 배심원들을 비롯한 재판관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방청자들의 몸과 소지품을 수색하고 금지물품을 휴대한 경우 재판에 참가시키지 않고있다.

《법치사회》라고 자처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방청군중의 몸과 소지품을 수색하려면 반드시 법적절차에 따라 수색령장을 발급받아야 수색과 압수를 진행할수 있다고 법조문 에 규정하고 요란스럽게 떠들고있지만 재판에 참가하는 방청자의 몸과 소지품에 대한 수 색은 아무러한 법적문건도 없이 진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것은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 식하기 위한 한갖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재판관은 저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경우 이러 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내걸고 재판심리에 방청자들의 참가를 극히 제한하고있다.

또한 재판심리의 전과정을 사진을 찍거나 록화, 록음하여 신문이나 보도에 공개할수 있는 기자를 비롯한 방청군중의 참가를 제한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나라들의 헌법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 등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정에서 사진을 찍거나 록화, 록음을 하여 공개하는것이 피고인의 인격과 관련된것이므로 그의 동의를 받고 재판관이 승인하여 야만 그러한 행위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미국에서는 련방헌법 제1수정안의 언론, 출판자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도기자나 일반대중은 형사재판심리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사건심리처리정형에 대하여 보 도할수 있다고 하고있으나 련방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판사는 법정심리과정을 텔레비죤 이나 실황방송, 록화를 통하여 공개하는것을 금지할수 있으며 변호사, 당사자, 증인 등이 사건상황을 외부에 공개하는것을 금지할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법에 따라 법정심리가 일단 시작되면 일체 록화기재나 록음기재, 텔레비죤촬영기, 영화촬영기나 사진기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오직 상소재판소 소장만이 재판과정을 록화할데 대한 신청의견을 들은 다음 법정심리과정의 텔레비죤록화를 비준할수 있다. 그러나 텔레비죤으로 심리과정을 그대로 방영하는것이 아니라 이미 제작한 화면에 록음만 넣고 그것을 공개한다. 때문에 그 어떤 범죄에대한 재판심리과정을 텔레비죤으로 공개한다고 하여도 실지 재판을 진행하는 화면은 없고 이미 재판심리과정과 결과를 보도할 때 리용하려고 제작한 화면만 방영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재판의 공개는 재판심리의 진행과 판결에 대한 공 개라고 하고있으면서도 그의 공개를 생동하게 하는것을 반대하는 목적은 저들의 반인민 적이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재판을 공개하면 군중의 반항에 부딪칠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그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불과하다.

또한 판사의 권한으로 재판심리에 참가한 사람을 법정에서 퇴장시키고있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법정에 방청으로 참가한 군중을 아무런 리유없이 퇴장시킬수 없다. 그것은 헌법과 해당 법규범들에 재판심리를 공개하므로 일반군중도 참가할수 있다고 규정한 조건에서 방청군중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여 심리전과정을 보고 듣는것은 그들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의 형사재판에서는 재판관에게 방청으로 참가한 군중을 마음 대로 퇴장시킬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하고있으면서도 그것이 《재판공개원칙》에 어긋나 지 않는다고 미화분식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의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모자, 외투를 착용한자, 법정에서 음식을 먹 거나 담배를 피우는자, 단정한 자세로 정숙을 지키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제멋대로 자리를 옮겨가며 앉는자 등에 대하여 퇴장명령을 내릴수 있다.

《자유》가 보장된 사회로 표방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이러한 행동은 자연스러운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재판관에게 법정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법적권한을 부여하고 삼엄한 재판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강압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법정질서를 조금이라도 침해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퇴장시키도록 하고있다. 만일 이들이 재판관의 요구에 반항하면 법정경찰까지 동원하여 그들을 강압적으로 퇴장시키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재판관에게 법정심리에 참가한 방청군중들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제멋대로 퇴장시킴으로써 형사재판에서 독단과 전횡을 부릴수 있는 권한을 합 법화해주는것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다.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재판공개원칙》의 기만성은 셋째로, 재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략화된 재판에 대하여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데서 표현된다.

자본주의나라들의 형사재판에서는 략식명령, 즉결심판과 같이 심리절차를 간략화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있다.

략식명령과 즉결심판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범죄가 날을 따라 증대되고 사건취급처리에 필요한 판사력량의 부족과 막대한 소송자금의 지출을 막고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온것이다.

략식명령은 경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1심재판심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리를 간략하여 진행하는 자본주의형사재판의 한 형태이다.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의 략식명령에서는 경찰의 수사자료에 기초하여 이미 인쇄되여 있는 양식에 간단히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및 형벌 등을 적어넣고 판사 혼자서 서명날인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략식명령은 원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꾸며낸것이다.

부르죠아지들은 자본주의제도자체의 부패성으로 하여 필연적으로 날마다 수많이 발생하는 범죄사건들가운데서 간단한 범죄사건까지 다 제1심재판심리의 절차를 그대로 거쳐 처리할만 한 재판인원과 소송자금을 충당할수 없는것으로 하여 그 해결책을 판사가단독으로 그것도 제1심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할수 있는 제도로서 략식명령을 내왔다.

사실심리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얼굴도 한번 본 일이 없이 경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써 판사가 단독으로 검토하고 양식에 써넣고 내리는 결정이 과학적이며 객관적이라고 말할수 없다. 그것은 모든 범죄사건은 다 사실심리를 통하여 피고인과 증인, 감정인 등을심문하고 증거를 검토확인한 다음에 판결, 판정, 결정이 내려져야 과학적인것으로 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의 략식명령은 국가기관인 재판소를 대표하여 판사가 단독으로 내린 결정에 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무조건 집행되도록 하고있다. 그 리고 판사가 내린 결정은 다 호적에 등록하고 피고인을 《전과자》로 취급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이와 같이 범죄자를 등록하는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수사에 리용하는것과 함께 전과자들에게 여러가지 제한조건으로 공민의 헌법적권리를 충분히 행 사할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수 없게 하자는데 있다.

즉결심판은 가벼운 범죄사건들을 제1심재판심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것이다.

즉결심판에서도 사실심리를 간략화하지만 재판관은 책임추궁을 당하는자를 법정에 불러다놓고 기소장에 반영된 범죄와 증거가 정확한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그로부터 인정하는 답변을 받은 다음 해당한 판결을 선고한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간이재판, 략식명령으로 처리할 사건들은 재판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즉시 판결을 내려 형벌을 적용한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의 형사재판에서 실시되고있는 즉결심판제도는 피고인이 자기의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인정한 범죄에 대한 조사뿐아니라 그와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도 중지되게 된다. 이렇게 범죄사실을 완전히 해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면 재판관은 단독으로 검사와 피고인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에 따르는 판결을 내리고있다.

부르죠아지들은 이러한 재판은 재판심리절차를 거치지 않기때문에 재판에서 《신속성》이 보장되므로 재판공개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있다. 그것은 피고인의 유죄답변은 철저히 피고인의 자원적인 의사에 기초한것이므로 사실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구래여 재판심리의 모든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심리를 공개할 필요도 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즉결심판은 피고인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면서 《질서위반자》 들을 손쉬운 방법으로 마구 처벌할수 있게 하는 반인민적인 억압수단의 하나이다.

재판의 공개는 모든 재판을 다 공개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의 략식명령, 즉결심판과 같이 간략화된 재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지배계급, 착취계급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들의 죄행이 폭로되는것을 막 고 어떻게 해서라도 형벌을 면제해주거나 감소시켜주기 위하여 기소단계에서 검사와 피 고인이 짜고 유죄답변을 한것으로 하고 비공개재판인 즉결심판으로 사건을 처리하고있다.

부르죠아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도 사건을 략식명령과 즉결심판절차로 처리하면 사건취급처리에 소비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하므로 국가의 소송자금을 절약하는데 유리하고 또 피고인이 구류장에 갇혀있는 시간이 단축되므로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다고 떠벌이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의 형사재판에서 략식명령과 즉결심판절차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범죄사실을 정확히 밝혀낼수 없게 할뿐아니라 범죄자에게 응당한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새로운 범죄가 계속 발생할수 있게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범죄를 범하고도 경한 처벌을 받게 되니 큰 자극을 받지 않게 되여 새로운 범죄를 또 감행하고있으며 조사되지 않은 련루자들 역시 활개치며 계속 범 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사건을 이와 같이 취급처리하는것은 결코 소송자금과 로력을 절약하기 위한데 있는것이 아니라 기본목적은 지배계급, 착취계급이 범죄를 범한 경우 그들에게 형벌을 적게 또는 완전히 면제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 리용하기 위한 데 있다.

그러나 부르죠아지들은 략식명령, 즉결심판과 같은 날치기식재판을 《피고인의 리 익》과 《신속성》이 보장된 재판이며 소송비용의 막대한 지출을 줄일수 있다고 미화분식 하고있다.

이와 같이 부르죠아지들이 저들의 형사재판에서 《재판공개원칙》이 재판에 대한 사회 적감독을 실현하여 판사들의 전횡을 방지한다고 미화분식하고있지만 그것은 광범한 근로 대중이 저들의 반동적인 형사재판에 대한 반항을 무마시켜 자본주의제도를 유지하고 착 취계급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수단에 불과한것이다.

실마리어 자본주의형사재판, 손해보상액